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1호(국공채)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21.09.24
3. 주요 변경 사항 :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 자산의 문구 수정
4. 변경사항

[집합투자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~2. (생략)</p> <p><u>3. 증권금융회사 및 본 조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 등이 발행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</u></p> <p>4~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~2. (중전과 동일)</p> <p><u>3.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</u></p> <p>4~9. (중전과 동일)</p> <p>② (중전과 동일)</p>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효력발생일	-	<u>2021년 9월 24일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u>-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 자산의 문구 수정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<p><u>투자대상 자산 등</u></p> <p><u>3. 증권금융회사 및 2.에 해당되는 기관 등이 발행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</u></p>	<p><u>투자대상 자산 등</u></p> <p><u>3.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</u></p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4) 운용자산규모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효력발생일	-	2021년 9월 24일